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54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안규백·황정아·염태영

김남희 • 부승찬 • 안태준

이병진 · 김준혁 · 오세희

박용갑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.

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,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하고 해결·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회군인권보 호관법안」을 제정하고자 함.

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·의사(議事)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국회법」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「국회법」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(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」(의안번호 제3451호), 「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52호) 및 「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53호)의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5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.

- ② 군인권보호관 1명과 그 소속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- ③ 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.
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군인권보호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5(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
	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
	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
	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
	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.
	② 군인권보호관 1명과 그 소
	속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	③ 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 교
	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
	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
	<u>다.</u>
	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
	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
항은 다음과 같다.	
1. 국회운영위원회	1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사. 군인권보호관 소관에 속
	<u>하는 사항</u>
<u>사.·아.</u> (생 략)	<u>아.ㆍ자.</u> (현행 사목 및 아목
	과 같음)
2. ~ 16. (생 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